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02.10.21	2021.11.22	X	0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신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9 조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장기미사용 외화계좌의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위해 본 조항을 신설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미화 10 불 상당액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담당부서명 : 운영관리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한국 내 전체 지점 포함, 이하 "은행"이라합니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 1. 외화보통예금
- 2. 외화정기예금

제 2 조 지급시기

- 1. 외화보통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 2.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계산

- 1. 이자는 연간일수를 360 일로 계산합니다.
- 2. 이자는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① 각 종 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 ②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제 5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 1.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안화 현찰로 외화예금에 입금할 때 외화현찰수수료를 면제한 경우로서 입금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 환율은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현찰매입률로 합니다.
- 2. 위안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은 계약 전 고객에게 수수료를 알리고, 고객은 은행의 계산근거에 따라 외화현찰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3.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외화 현찰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은 계약 전 고객에게 수수료를 알리고, 고객은 은행의 계산근거에 따라 외화현찰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4. 은행은 상기 2~3 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합니다.

제 6 조 약관의 적용

- 1.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2. 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양도 및 질권설정

- 1. 이 예금은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은 때에 한해 양도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2. 담보제공은 거주자에 한해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담보 제공이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 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8 조 이자

- 1.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6 월 20 일과 12 월 20 일에 계산하여 익 영업일(이하 '원가일') 원금에 더합니다.
- 2.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해당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 9 조 거래중지계좌

<u>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u> <u>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u> <u>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u>

1. 예금잔액이 미화 10불 상당액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 3 장 외화정기예금

제 10 조 이자

- 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2. 예금주가 만기일전에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중도해지 하는 예금의 이자는 입금 건별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중도해지 이율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사유로

인해 만기일 이전에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입금 건별 만기 후 경과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만기 후 이율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11 조 만기 후 자동 재예치

- 1.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거나 만기일 전에 자동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적용이율을 제외한 직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재예치 합니다.
- 2. 자동 재예치한 예금의 이자율은 갱신일 은행이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3. 월 단위 또는 연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자동 재예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자동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 갱신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됩니다.
- 5. 자동 재예치 금액은 입금원금 또는 원리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